

언론중재위원회 2021년 토론회 요약



▣ **대주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인격권 보호

- 제1주제 :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상의 뉴스 콘텐츠와 인격권 침해
- 제2주제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가능성 검토

▣ **개최일시:** 2021. 12. 22.(수) 14:30~17:00

▣ **참석자**

- 가. 사회자 : 이민규(서울제1부 중재위원,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나. 발제자
 - 제1주제 :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 제2주제 : 임상혁 (서울제6부 중재위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다. 토론자
 -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장,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최창수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美 변호사)
 -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교수)

* 지면 부족으로 참석자의 의견을 간략히 게재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유튜브 링크(<https://youtu.be/BGhgFLEd43A>)를 통해 전체 다시보기 가능하며, 발제문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www.pac.or.kr) > 정보 자료실 > 기타 간행물 > 세미나/토론회 자료집에 게시돼 있습니다.

제1주제(박아란)

유튜브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디지털 뉴스 소비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등에 의하면 유튜브와 카카오톡 등 SNS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이러한 미디어 플랫폼을 언론이라고 인식하는 수준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등장으로 매체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 유튜브 등 특정 매체 유형에 대해 ‘언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예컨대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방송 내용을 게시하는 방송사 웹페이지는 인터넷신문인지 인터넷뉴스서비스인지, ‘OO 방송’, ‘OO TV’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유튜브 채널은 방송인지 아닌지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언론관련 법률상 ‘언론’의 정의에 의하면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은 언론이라 할 수 없다. 유튜브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뿐 아니라, 전·현직 언론인이 운영하는 채널, 언론사가 운영하는 채널 등 어떠한 경우이건 엄밀히 말해 ‘언론’에 속하지 않기에 유튜브 채널에 대한 독립된 조정이나 중재는 시행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언론보도에 대해 그 언론사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조정신청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된 사례가 다수 있고 소송에서도 원 기사뿐 아니라 유튜브와 SNS상 기사에 대해 함께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동일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재발행 또는 배포되는 경우에는 매체 형태의 구애 없이 조정대상으로 삼도록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2주제(임상혁)

유명 유튜버 등은 기존 매체와 비견될 만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유력한 언론사들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공표된 내용 또한 ‘보도’로 인식하고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조정을 신청하고 있다. 그간 유튜브 관련 조정신청 사례를 보면 제1유형은 언론사가 언론보도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 함께 게시한 경우, 제2유형은 언론보도 없이 유튜브 채널에만 기사를 게시한 경우, 제3유형은 ‘뉴스’를 전문분야로 표방하는 유튜버가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내용을 게시한 경우, 제4유형은 뉴스 전문을 표방하지 않는 일반 유튜버가 인격권 침해 내용을 게시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그 조정과정을 살펴보면 언중위는 위 4개 유형 모두 피신청인의 의지에 따라 조정을 진행하거나 신청을 각하하고 있다. 즉 당사자 적격이나 집

행가능성의 문제로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행 언론중재법, 신문법 등에 의하면 유튜브 등에 대한 조정신청은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 문제로 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 신문법상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튜브 채널들도 다수 존재하고, 실제 유튜브 관련 조정신청시 양당사자가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언증위는 내부기준을 마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설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제1유형 및 제2유형은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에 해당되고, 제3유형은 언증위의 적극적인 조정 안내 및 노력, 제4유형은 현행법상 조정 불가 등 언증위가 명확한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법률 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정토론

① 금준경 유튜브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그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튜브로 인한 인격권 피해 주장은 주로 공인이나 유명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므로 보편적 심각성 정도를 확인하려면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언론매체가 유튜브 내용을 사실확인 등 검증 없이 그대로 옮기면서 더욱 피해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② 정민영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침해사실을 소명하면 조정부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여부를 심사하는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사업자들은 그 심사결정에 따라 이용자 정보 제공에 협조하는 반면, 구글(유튜브), 트위터 등 해외사업자들은 협조하지 않는다. 특히 조정부에서 당사자(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됨을 통보하더라도 대다수의 경우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2021년의 경우 7월까지 접수된 570건 중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결정이 이뤄진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정보통신망법상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줄 방안이나 근거가 없고, 실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적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므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할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③ 최창수 이미 국내에서도 유튜브 등을 통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해외 선진국의 다양한 제도를 검토한 사례가 있다. 유튜브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와 동일선상에서 검토할 경우 역으로 언론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장치들을 유튜브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고, 만약 유튜브 등에 대해 조정중재제도를 적용하게 된다면 조정신청이 폭증할 우려가 있다.

④ 황용석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현행 언론법제는 언론에 대한 규제적 성격과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지원법의 성격이 있으므로 인격권 보호라는 규제적 기준으로만 언론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규제적 측면의 경우 내용규제보다 사업자규제에 해당하므로 인격권 침해가 이뤄진 유튜브나 SNS 등의 계정이 언론중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언론'사가 소유한 것이거나 기자 등 개인 명의라 하더라도 언론사가 직접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경우라면 언론중재제도를 적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